

2022년 조리사(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광주소방서에서 무기계약근로자(조리사)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11. 29.

광주소방서장

I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채용인원	분 야	업무 내용	비 고
광주소방서	2명	조리사	조리 및 위생관리 업무 등	단시간근로자 (6시간)

II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성별 및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성별무관 ※ 단, 남자의 경우 2022.11.14.(공고일 前 일)까지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 “조리”의 자격 소지자, 조주기능사 제외
거 주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前 일(2022. 11. 14.)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조리사 경력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고령자고용법” 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 (준고령자 : 50세 이상 55세 미만, 고령자 : 55세 이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규정」 제10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식품위생법」 관련법령

【법 제40조(건강진단)】

-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III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3. 1. 1.(일) ~ 기한의 정함이 없음 * 정년 만 60세
- 근무시작(예정일) : 2022. 1. 2.(월) * 근무 전 인계를 위해 센터 방문하여 근무 할 수 있음
- 근무장소 :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광주소방서 오포119안전센터
 ※ 채용 후 광주소방서 내 타 부서 등으로 근무지 이동될 수 있음
- 근무방법 : 휴게시간 제외, 주 30시간(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오전 10:00 ~ 13:00, 오후 16:00 ~ 19:00)
 ※ 소방공무원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 후 토·일·공휴일 근무할 수 있음
- 연장근로 : 하루 4시간 이내, 1주 12시간 한도
- 보수 및 복무 : 「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 규정」에 의함
 ※ 무기계약근로자 ‘가’직군(단시간) 해당호봉의 봉급표
- 기 타
 - 명절휴가비 : 봉급의 75% × 연 2회(설, 추석)
 - 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자녀 학비보조수당 등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 그 외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 규정」에 따름

IV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구 분	일 정	장 소 (시행기관)
채용공고	2022. 11. 29.(화) ~ 12. 7.(수)	• 홈페이지[광주소방서, 광주시청, 워크넷]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2022. 11. 29.(화) ~ 12. 7.(수)	• 접수처 : 광주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 접수방법 : 방문, 우편(등기) 또는 전자메일 (광주소방서 소방행정과 공무원담당자) - 전자우편 제출(zero571@gg.go.kr) ※ 문의전화 : 031-799-2215

구 분	일 정	장 소 (시행기관)
서류심사	2022. 12. 8.(목)	• 광주소방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2. 12. 8.(목) 18:00	•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실기,면접)	2022. 12. 14.(수)	• 광주소방서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2. 16.(금)	• 개별통보
합격자 등록 및 계약	2022. 12. 20.(화)	• 광주소방서 소방행정과

※ 모든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별 통보 예정

V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양식)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별지 2호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조리사 자격증(사본)
-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1부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원본, 병역사항 포함_남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응시원서 상 자격, 경력기재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증명서

VI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심사
 - 심사항목
 - ▶ 제출서류 종류(미비, 미 첨부), 채용 자격 조건, 우대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 여부 등 적격여부 확인
- ※ 결격사유, 채용관련서류가 미비·미첨 및 허위·위조로 확인될 경우 탈락

○ 2차 시험 : 실기시험(조리) (시험일시 및 세부사항 변경 가능)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평가방법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리 능력을 심사

※ 평정요소(3개 항목) : ① 음식을 조리하는 태도 ② 청결상태 ③ 음식의 맛

▶ 실기과목(음식) : 별도선정 / 실기시간 60분 내외

▶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총합의 평균으로 평정점수 산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 평가결과 : 미공개

○ 3차 시험 : 면접시험 (시험일시 및 세부사항 변경 가능)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평가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정요소별)

※ 평정요소(3개 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업무지식 및 응용능력 ③ 업무 성실성 및 예의·품행

▶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총합의 평균으로 평정점수 산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 최종 합격자 결정

- 직종별 최종 합격자 :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 선발 예정인원의 1배(2명) 별도 선발

※ 최종합격자 임용될 수 없을 때 또는 3월 이내 퇴사 시 예비합격자로 총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합보호대상자

2. 경기도 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동종업무 기간제근로자 경력이 많은 자

3.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 등의 조리사 경력자

○ 채용후보자 등록

- 일 자 : 2022. 12. 12.(월)

- 대 상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는 제외, 예비합격자의 경우 추가 합격자 발표 시 등록절차 진행

○ 등록 전 확인사항

- 면허증 및 자격증의 유효여부 확인하여 자격상실 등 발생 시 합격 취소

VII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소방서 소방행정과(031-799-2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

표준 응시원서(안) 및 자기소개서

<필수항목>

지원자 성명	한글		
	영문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선택항목>

주요 경력사항	회사명	근무기간(연, 월)				직급	주요업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지원동기, 성장과정,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등급	장애인 등록번호
저소득층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여부		

□ (참고) 작성요령

▣ 기초심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격증·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하게 되므로, 기초심사서류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것

□ 선택항목

1. 주요 경력사항

근 무 처 (부서)	근무기간	근무월수 (월일수)	직위 (급)	주요업무실적
1. 00 기업 (00팀)	20XX.X.X. ~ 20XX.X.XX.	XX개월	대리	

【작성요령】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0000.00.00)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③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2.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1. 00자격증	XXXXXX	2009. 3. 28.
2.		
3.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	--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4.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등급	장애인 등록번호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저소득층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여부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로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필요시 추가사항

6. 연구실적

논문지 발표/학술대회 발표/저서발간 등 실적

제 목	연구자/저자	발표논문지(논문지 종류) / 발표대회 / 출판사	발행(발표) 연월일	비고
1.				
2.				
3.				

※ 논문지 발표/학술대회/저서발간의 주요 내용이 동일할 경우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기재

【논문지 발표】

- ① 연구자수(참여기여도)는 논문에 기재된 순서대로 참가자 명단을 모두 기재
예시) 1인, 2인(주저자), 2인(제2저자), 3인(주저자), 3인(교정저자), 3인(000, 000, 000)
- ② 발표논문지명은 논문을 발표한 저널지명을 기재
- ③ 논문지 종류는 SCI, SCIE, 학술진흥재단 등재논문 또는 후보논문, 기타 등으로 기재

【학술대회】

- ① 연구자는 발표된 학술지에 기재된 순서대로 모두 기재
- ② 발표대회 및 발표지명은 발표된 학술대회 및 발표지명 등을 기재하며,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③ 전문논문지 발표실적에 기재된 내용은 제외
※ 발표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발표시기, 발표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만 인정

【저서발간】

- ①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명을 모두기재
- ② 비고란에 발간목적 기재 (순수창작저서 또는 교재, 시험서적, 강의용 교재 등)

연구용역 실적

제 목	참여기여도	연구용역 발주기관()	연구용역 수행기관	계약금액	연구용역 기간
1.					
2.					

【연구용역】

- ① 참여기여도 : 용역수행과정에서 본인 역할이 책임연구원 또는 단순참여자인지를 기재
※ 용역참가 사실 및 기간을 확인한 후 기재
- ② 연구용역 발주기관이 국외인 경우는 ()에 국가명을 표시

- ③ 계약금액은 만원단위로 기재
- ④ 연구용역기간은 계약서상의 명기된 기간을 기재 (예시) 2005. 3. 2. ~ 2005. 9. 30.
- ⑤ 연구용역 실적은 용역참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것만 제출

6-1. 연구실적 제목

○ 주요내용(소제목)
- 굴림 12P

【작성요령】

- ① 연구실적별 주요내용은 반드시 A4용지 1/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 ②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한글로 번역하여 작성
- ※ 연구 실적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는「7-2, 7-3 ...」등의 순으로 추가 기재하되, 최대 5개까지만 작성

7. 특허·기술개발 실적

특허 출원 또는 등록 실적

특 허 명()	발명자	출원자	특허 출원		특허 등록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2.						

【작성요령】

- ① 국제특허인 경우 특허명()안에‘국제’라고 기재
- ② 발명자 명단은 모두 기재
- ③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특허출원란만 기재하고,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특허출원란 및 특허등록란에 모두 기재

기술개발 발표 실적

제 목	연구자	발표지	발표(발행) 연월일
1.			
2.			

【작성요령】

- ① 연구자는 공동 개발의 경우 참여한 연구자를 모두 기재하고 본인의 역할 표기
- ② 발표지는 기술개발이 발표된 학술지, 신문지 등을 기재

7-1. 특허/기술 제목

- 200자 이내로 주요내용을 작성
- 발명자 명단 :

【작성요령】

- ① 외국어로 작성된 특허출원내용은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작성
- ※ 특허/기술개발 항목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는「8-2」, 「8-3」... 등의 순으로 5개까지 기재

8. 수상 실적

내 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1. 전산0000 경진대회	20XX. X. X.	
2.		

【작성요령】

- ① 사내대회 수상 실적 등 증빙이 불가능한 것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9. 기타 실적, 능력 등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

【작성요령】

- ① 기타 실적, 능력 등은 반드시 A4용지 1/2페이지내의 분량으로 작성

10. 자기소개서

-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작성요령】

- ① 경력응시자는 응시관련 업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직무)를 상세히 기재할 것

【별지 3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광주소방서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경력(재직) 증명서

기관 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예시)	근무 형태		
				(예시)	2010.12.25. ~ 2012.12.22.	상근		
				(예시)	2010.12.25. ~ 2012.12.22.	비상근 주20시간		
				(예시)	2010.12.25. ~ 2012.12.22.	시간제 주10시간		
	총 근무기간							
	집단급식소 해당유무		(유), (무)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1		확 인 자 2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서 명		서 명	

년 월 일

_____ 사 (직인)

광주소방서장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영양관리사 직종의 경우 근무한 회사의 식당이 집단급식소에 해당되는지를 (유), (무)로 작성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문의처 : 광주소방서 소방행정과 (☎ 031-799-2215)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광주소방서 무기계약직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광주소방서 팩스(031-280-8759) 또는 이메일 (zero571@gg.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광주소방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광 주 소 방 서